



10살 맞이 소화기 필수 건강검진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는
10년이 경과하면,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7. 1. 28. 시행)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는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성능확인을 받아 합격할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2017. 2. 15.시행)
* 노후소화기 성능확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시험인증부 (☎ 031-289-2838)로 문의